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허성무 · 이학영
이정문 · 백선희 · 임호선
김 윤 · 이주희 · 임문영
김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,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·지원하는 ‘행복한 일터 인증제’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정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11.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
11. (생략)	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